

20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2차) 심의 및 의결 결과

【평가운영위원회 심의 안건】

1 (안건1)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

- 기관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
 - 이의신청 기간 : '20.10.19. ~ 10.27.(7일간)
 - 이의신청 현황 : 3개 기관(12문항)
-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심의·의결
 - 심의 결과 기관 통보 : '20.11.10. ~ 16.

심의 결과	실무위원회 심의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적정으로 판단하여 등급 결정에 반영
-------	--

2 (안건2) 2020년 기관평가 등급 결정

- 118개 기관 평가등급* 결정

S등급(%)	A등급(%)	B등급(%)	C등급(%)	D등급(%)
-	16개소(13.6%)	54개소(45.7%)	34개소(28.8%)	14개소(11.8%)

* 5단계 절대평가(1,000점 만점)

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900점 이상	800~899점	700~799점	600~699점	600점미만

심의 결과	등급 분포 등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 승인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【평가운영위원회 심의 안건】

3 (안건3) 지도사기관 이의신청 결과 적용

○ 지도사기관(4개소) 일부 평가항목 변경사항 일괄 적용

- 「〈A.2.1.3〉 법정인력 업무전문화 노력」 평가항목 결측 처리

* 결측방법 : 지도사기관의 위촉의사는 정규직(계약직)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지도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.2.1.3 평가항목 1,000점 환산 적용

- 「〈A.2.2.1〉 지도요원 교육훈련계획 수립·이행 여부」 평가항목 위촉의사 제외하여 평가

* 결측방법 : 위촉의사에 대해 지도사기관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, 산업보건 지도사만 평가 적용

심의 결과	지도사기관 일부 평가항목 일괄 적용에 대한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 승인
-------	---